

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(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)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7. 08.
고령군수

□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현황

연번	상 호	대표자	영업소위치	폐업일자	비고
1	씨유 고령휴게소점	김**	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819	2026.07.08.	

□ 소매인지정 신청

- 신청 접수기간 : 2026.07.08. ~ 2026.07.15. 18:00.
- 신청 대상자 : 폐업 업소 인근상가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
(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)

가. 일반소매

-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

나. 구내소매

-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 백화점·쇼핑센터 등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·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

- 접수처 : 고령군청 지역경제실

- 구비서류

- 신청서
-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미 첨부 가능)
-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(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

□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

-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.(추첨방법은 추후 통보)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가족(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은 우선하여 지정가능
- 기타 문의사항 : 고령군 지역경제실 (☎ 054-950-6564)

소매인지정신청서

[]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

[]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상호(법인명)	전화번호	
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		
	영업소 위치		

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사업자등록증 2. 국가유공자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(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뒤쪽)

